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제11회 정기이사회 회의록

2019. 11. 27(수) 16:00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Seoul Scholarship Foundation

제11회 정기이사회

- 일 시 : 2019년 11월 27(수) 16:00
- 장 소 : 서울장학재단 회의실
- 재적이사 : 총 11명
- 출석이사 : 총 8명
- 출석감사 : 총 1명

이사장이 제11회 정기이사회를 개회를 선언한다.

사무국장이 제11회 정기이사회 성원을 보고하다.

이사장이 인사말에 이어 안건을 간단히 설명하고, 사무국장이 미리 배포된 회의자료를 통하여 주요보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다.

- 보고안건**
1. 전차 이사회 회의보고
 2. 재단 운영 보고
 3. 장학사업 추진 현황 보고

보고사항이 완료되어 이사장이 다음 안건에 관하여 심의를 구하다.

제197호 2020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심의에 관한 건

이사장은 제197호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현재 서울시의 2020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고, 2019년 사업이 진행 중 이지만 재단의 조례와 정관에 근거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에 제출해야 하므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다고 말하다. 최종 확정된 서울시 예산을 반영한 2020년 사업계획은 2019년 결산과 함께 내년 2월 이사회 때 다시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경영부분 및 사업부분 사업계획에 대하여 준비된 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다.

사무국장이 총괄 예산에 대하여 준비된 자료를 통하여 설명하다. 2020년 세입총계는 12,587,308천원이며, 세출총계는 12,587,308천원이라고 말하다. 세입 세부내역은 서울시 출연금 11,491,308천원, 기부금수입 404,000천원, 전기이월금 381,000천원, 이자소득 등 311,000천원으로 총 12,587,308천원임을 설명하다. 세출 세부내역은 사무국 운영경비 1,058,189천원, 사

업비 11,178,119천원, 예비비 및 기타 351,000천원으로 총 12,587,308천원임을 설명하다. 사무국운영비는 전년대비 83,02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인건비 인상을 반영 및 2019년 신규 채용 인력의 12개월분 경비 반영으로 일부 증액되었다고 말하다. 사업비는 전년대비 167,540천원이 감소되었으며, 2020년부터 고등학교 2~3학년의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희망고교 장학금을 감액하였고, 대학생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분야 장학금도 일부 감액하였다고 말하다. 진로장학금 및 공익인재장학금 등의 학업장려지원 장학사업의 예산을 증액하고 독립유공자후손 장학금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정보화 사업비 및 홍보사업비도 증액하였다고 말하다.

○○○ 이사가 홍보비 예산이 증액되었으므로 장학생의 성공스토리를 활용하여 대외홍보(민간협력기금)를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다.

○○○ 이사가 장학생 성장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장학생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사업 진행 등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장학생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장학생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장지원사업이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하다. 또한 서울꿈길장학금과 관련하여 제도권 내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면 좋겠다고 말하다.

사무국장이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조례 등 관련규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성장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 할 예정이라고 말하다.

○○○ 이사가 정부에서 무상교육 등 기본적인 교육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지원사업 확대에 동의하며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학생들에게 수료증 발급을 통해 향후 진로 및 진학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다.

사무국장이 성장지원 사업 중 미디어 스쿨의 경우 수료증이 발급되었고 실제로 장학생들이 수시 지원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공익인재 장학금 등 장학생들의 활동이 수반되는 장학금의 경우 활동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말하다.

이사장이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7호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198호 정관 일부 개정에 관한 건

이사장은 제198호 정관 일부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정관을 개정하고자하며, 기본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여러 개의 정기예금을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기본재산 별지목록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하다. 법 개정 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하여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었으나, 법 개정 후 법인세법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의거하여 2021년부터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이

필요한 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을 충족하고자 정관을 개정해야한다고 설명하다. 주요개정내용은 정관 제16조제3항을 『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31일까지 공개한다.』 신설하고, 그 동안 기본재산을 총 11개의 정기예금 계좌로 운영하였으나 총 3개의 정기예금 계좌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정관 제6조제4항 제2호의 기본재산의 별지목록2』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 이사가 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를 지정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하다.

이사장이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8호 정관 일부 개정 에 관한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이사장은 이상으로서 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2019년 11월 27일